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04427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http://www.kma.org]/전화(02)6350-6542/전송(02)793-8702
의무법제국 국장 곽석철(6573) **의무팀장** 김철욱(6542) 팀원 김경덕(6582) E-mail : kam008@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 08868호

시행일자 2026. 11. 5.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161(2026.10.15.)

3.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추가 처방이 필요한 경우, 조기·중복 처방의 허용 여부 및 판단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기준

○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 처방하는 경우, 종전 처방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추가·중복 처방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유의사항

○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중복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처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처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결정의 근거와 사유를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으로 인한 의존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품목 허가사항,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하여야 함.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